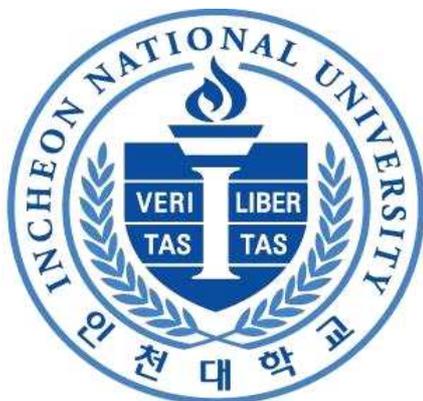

기숙사생 선발수칙



인천대학교 생활원

인천대학교 기숙사생 선발수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선발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 및 입·퇴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선발수칙(이하 "선발수칙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선발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재학생"이라 함은 기숙사 입사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(초과학기자 포함)을 말한다.
- ② "신입생"이라 함은 본교 입학 절차에 의거 기숙사 입사일 현재 최종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.
- ③ "별도선발"이라 함은 생활원 운영규정 제7조(기숙사생선발)에 의거 생활원장이 부서 또는 학과(부)의 별도 배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0.11.30.>
- ④ "배정인원"라 함은 각 단과대학 및 별도선발 대상자에 대해 미리 정한 선발인원을 말한다.
- ⑤ "기숙사생"이라 함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.
- ⑥ 삭제
- ⑦ 삭제
- ⑧ "계절학기 개관"이라 함은 동·하계방학 기간 중 기숙사를 개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⑨ "특별 개관"이라 함은 동·하계 방학 기간 중 본교의 각 학과(부) 및 부서가 주최, 주관,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개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⑩ "주민등록 이전"(이하"전입신고"라 한다)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이 해당 기숙사로 주소를 이전한 것을 말한다.
- ⑪ "재적생"이라 함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말한다.<신설 2020.11.30.>

제 2 장 선발기준

제4조(입사자격 및 입사기간)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원 수료생, 선발 학기 입학(복학)예정자로 한다. 단, 기숙사 여석이 있는 경우 자격을 재적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.<개정 2020.11.30.>

② <삭제>

- ③ 생활원의 입사 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본교 학사일정을 따른다.<신설 2022.12.13>
-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원장은 필요에 따라 입사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입사 시작일·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.<신설 2022.12.13>

제5조(입사제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영구 입사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
 - 2.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뒤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
 - 3. 전염성 질환자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 한 자
 - 4. 별도 선발 대상자 중 고 별점자
 - 5. 학사 학위취득 유예자
 - 6. 생활원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 및 피해를 준다고 인정된 자
- ② 입사제한자 중 학사 학위취득유예자는 기숙사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할 수 있다.
<개정 2020.11.30.>

제6조(입사신청) ① 재학생 및 신입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신청자 및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입사 신청서 1부
 - 2. 주민등록등본(거리점수 부여자에 한하며, 전입신고자의 경우 초본 제출) 1부
 - 3. <삭제>
 - 4. 건강진단서 1부(합격자)
 - 5.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(재외국민에 한함)
 - 6. 전입신고 서약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7. <삭제 2023. 05.26>
- ③ 주민등록등본의 발행 일자 기준은 생활원에서 기숙사생 선발 시 공지하며, 발행 일자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거리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.
- ④ 입사 신청서는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하며,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파일 첨부해야 한다.
- ⑤ <삭제>
- ⑥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. 단, 신청자 미달 시에는 다른 기숙사 불합격자의 추가 신청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.
- ⑦ 전입신고 가산점은 전입신고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부과하며, 가산점은 3점으로 한다.<개정 2023.05.26.>
- ⑧ 제출서류를 위·변조 또는 미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입사

후에도 합격을 취소하며 강제퇴사 조치한다.

제7조(선발) ① 재학생은 성적, 거리점수 및 별점점수, 전입신고 가산점을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.

1. 재학생 : (직전 두 학기 평점평균×10)+별점 점수+거리점수+전입신고 가산점=총점
- ② 성적점수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두 학기(계절학기 제외) 평점평균을, 신입생의 경우 전형유형별 입학 성적을 적용한다. 단, 이수 학기가 두 학기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한 학기만 반영한다.
- ③ 거리점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부등 · 초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 주소지 (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의 경우 전입신고 직전 주소지)를 반영하며,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<개정 2023.11.13.>

| 구분 | 지역 | 시·군·구 별 | 점수 |
|------|------|---|----|
| 1 급지 | 경기 A | 포천시 · 연천군 | 11 |
| | 인천 A | 옹진군 | |
| | 기타 | 광주광역시 · 대구광역시 · 대전광역시 · 부산광역시 · 울산광역시 · 세종특별자치시 · 제주도특별자치도 · 강원도 · 경상남도 · 경상북도 · 전라남도 · 전라북도 · 충청남도 · 충청북도 · 해외 | |
| 2 급지 | 경기 B | 이천시 · 평택시 · 안성시 · 양평군 · 가평군 · 여주시 | 9 |
| 3 급지 | 경기 C | 파주시 · 구리시 · 양주시 · 오산시 · 하남시 · 남양주시 · 광주시 · 의정부시 · 동두천시 | 7 |
| | 서울 A | 도봉구 | |
| | 인천 B | 강화군 | |
| 4 급지 | 경기 D | 의왕시 · 화성시 · 고양시 · 용인시 | 5 |
| | 서울 B | 은평구 · 종랑구 · 노원구 · 광진구 · 성북구 · 강북구 · 강동구 | |
| 5 급지 | 경기 E | 시흥시 · 안산시 · 과천시 · 광명시 · 성남시 · 수원시 · 안양시 · 군포시 · 김포시 | 3 |
| | 서울 C | 서초구 · 관악구 · 구로구 · 영등포구 · 동작구 · 양천구 · 금천구 · 강서구 · 마포구 · 송파구 · 용산구 · 종로구 · 서대문구 · 중구 · 성동구 · 동대문구 · 강남구 | |
| 6 급지 | 인천 C | 중구 · 미추홀구 · 서구 · 계양구 · 동구 | 1 |
| | 경기 F | 부천 | |
| 7 급지 | 인천 D | 연수구 · 남동구 · 부평구 | 0 |

④ 별점 점수는 1점당 1점을 반영하며,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별점은 차기년도 선발에 반영된다.

⑤ <삭제>

⑥ 학년별 선발 비율은 1학년 45%, 2학년 20%, 3학년 20%, 4학년 15% 내외로 한다.<개정 2022.12.13.>

⑦ 선발은 【별표 1. 선발절차】에 의거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호의 순으로 결정한다.

1. 성적
2. 거리점수
3. 연소자

⑧ <삭제>

⑨ <삭제>

⑩ <삭제>

⑪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 합격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며, 선발 비율은 본교의 매 학년도 수시 및 정시의 입학정원에 따라 생활원장이 결정한다. 선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입생 : (입학성적×45÷전형별 만점)+거리점수+전입신고 가산점=총점

⑫ 재학생의 성적 반영 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을 반영 한다. 단, 9학점 미만인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.

⑬ 본교 재학생 중 해외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에 반영된 이후 적용된다. 단, 선발 시점에 성적이 학적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한다.

⑭ 1학기 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는 해당년도 입사가 보장된다. 단, 계절학기의 경우 직전 학기 정기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에 한하여 입사가 보장되며, 중도입사 및 퇴사자는 입사 보장에서 제외된다.

⑮ 외부인(비 기숙사생)으로서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 출입하여 생활지도사에게 지도를 받고 벌점을 받은 학생이 기숙사에 지원 할 경우 선발 점수에 벌점이 반영된다.

⑯ 전입신고 가산점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(입사 후 30일 내)에는 강제퇴사 조치 된다.

⑰ 입사자 중 정기 퇴사일까지 벌점 7점인 기숙사생은 1년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, 입사 보장되지 않는다.

⑱ 생계급여 수급자는 입사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하여 선발한다.

<신설 2023.05.26.>

제8조(복학생, 편입생, 재입학생) ① 기숙사 지원 자격 및 선발, 제출 서류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며, 성적은 휴학 및 편입 직전 두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.

② 인원은 별도선발을 제외한 일반 선발 인원의 10% 내외로 배정하며, 학년 구분 없이 선발한다.<개정 2020.11.30.>

③ 복학생 및 재입학생 중 취득한 성적이 없는 학생은 선발대상에 포함하되, 성적 점수는 0점으로 반영한다.

제9조(우선선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 선발 할 수 있다. 단, 장애인 도우미는 장애인실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선발한다.<삭제 2023. 05.26>

1. <삭제 2023. 05.26>
2. <삭제 2023. 05.26>
3. <삭제 2023. 05.26>

제10조(별도선발) ① 별도선발 해당 부서 및 학과(부)는 각 호와 같다. 각 부서 및 학과(부)는 배정인원에 맞게 최종 입사 대상자 명단을 생활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입사가 제한된다.

1. 동북아국제통상학부
2. 체육진흥원
3. 국제교류원(국제교류팀, 국제교육지원팀)<개정 2022.12.13.>
4. INU어학센터
5. 대학원
6. CPA 준비반
7. 임용고시 준비반
8. 선예원
9. 학생군사교육단<개정 2023.05.26.>
10.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<신설 2023. 05. 26>

② 생활원장은 추천자 명단 중 자격심사를 통해 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삭제

④ 별도선발 학생은 해당학기(계절학기 포함) 고별점자(4점 이상)의 수만큼 조정되며,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.

1. 조정 인원 = 고별점자 인원×해당 기관 배정인원×0.5%

⑤ 별도선발 대상자는 입사 신청 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원 수료생에 한한다.
<개정 2020.11.30.>

⑥ <삭제 2020.11.30.>

⑦ 각 부서 및 학과(부)의 별도 선발 학생이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, 일반학생 1년 입사 보장제도에 따라 2학기 별도 선발 배정 인원은 1학기 입사 인원으로 조정된다.

⑧ <삭제 2023. 05.26>

⑨ <삭제 2023. 05.26>

⑩ <삭제 2023. 05.26>

⑪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은 각 기숙사 장애인실에 우선 배정한다. 단, 장애인실 이용 불가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일반실에 배정할 수 있다.<신설 2023. 05. 26>

⑫ 별도 선발자는 해당 년도 입사 보장에서 제외되며, 별도 선발이 아닌 일반선발 신청 시 신규 선발 대상자에 포함되어 일반선발자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선발한다.<신설 2023. 05. 26>

제11조(합격 통보 및 등록) ① 합격자 발표는 생활원에서 지정한 곳에 공지한다.

② 합격자는 기숙사 사용료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된다.

- ③합격자는 결핵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 등을 기숙사 입사일에 생활지도사에게 결핵 이상 유무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, 미확인 시 입사를 불허한다. 단, 진단서는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것만 인정 된다.<개정 2022.12.13.>
- ④<삭제 2020.11.30.>
- ⑤배정된 호실은 기숙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⑥합격자는 입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식은 【별지 제1호】와 같다.

제 3 장 입사 및 퇴사

- 제12조(정기 및 중도 입사)** ①정기입사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, 생활원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 한다.<개정 2022.12.13.>
- ②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한 기숙사생은 입사 기한까지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입사 하여야 한다.
 - ③정기입사일 이후에 입사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은 지연 입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무단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된다.
 - ④<삭제>

- 제13조(사전 입사)** ①생활원장은 다음 학기 입사 대상자 중 외국 유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해 정기 개관 전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사전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사전입사 대상자는 해당 부서 및 학과에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.
- ②사전입사자는 사전 입사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 해야 한다.
 - ③사전입사 기간중에 중도 퇴사 시 기숙사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 - ④<삭제>

- 제14조(추가 입사 및 선발)**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로 선발할 수 있다.
1. 불합격자 중 총점 순으로 선발
 2. 추가로 입사 신청을 접수하여 선발
 3. <삭제>

- 제15조(정기 및 중도 퇴사)** ①정기 퇴사일은 입사 기간 종료일과 동일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퇴사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2.13.>
- ②중도 퇴사는 자진 퇴사와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.
 - ③자진 퇴사를 원하는 기숙사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퇴사신청서를 제출한다.
 - ④생활원장은 기숙사 내에서의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숙사생을 강제 퇴사 시킬 수 있으며, 필요시 영구 입사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⑤강제 퇴사는 퇴사 결정이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.

- ⑥입사 신청 자격에 대한 학적 변동(휴학, 미복학)이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생활원에 알려야 하며 미신고 시 강제 퇴사한다.
- ⑦정기입사 전 기숙사 입사 취소자, 중도 퇴사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추가선발 및 중도 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. 단, <삭제> 질병, 군 입대, 취업 등 입사가 불가능한 사유는 예외로 하며, 입사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제 4 장 기숙사 사용료

제16조(기숙사 사용료) 기숙사 사용료의 기간 및 호실별 금액은 【별표 2】와 같다.

제17조(납부 및 환불) ①입사자는 기숙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어 입사할 수 없다.

- ②정기 입사일 이후 추가 합격 할 경우 입사일을 포함한 주부터 잔여기간을 계산 하여 기숙사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③<삭제>
- ④<삭제>
- ⑤중도 및 강제 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(주 단위)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.
- ⑥정기 입사 전일까지 입사취소 신청 시 납부한 기숙사사용료는 전액 환불한다.

제 5 장 기타 사항

제18조(특별개관) ①동·하계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개관의 입사 인원을 고려하여 특별 개관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②<삭제>
- ③<삭제>
- ④<삭제>
- ⑤특별개관 중에는 본교 각 학과(부), 부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외부 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, 대상 및 사용 절차는 【별표 5】와 같다.
- ⑥특별개관(교내기관, 외부기관 및 단체)의 기숙사 사용료의 기준은 각 기숙사 별로 책정되며 기준은 【별표 2】와 같다. <삭제>

- ⑦특별개관 시 기숙사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며, 기간 내에 납부해야만 입실을 허가한다.
- ⑧특별개관은 BTL기숙사를 우선 개관한다.
- ⑨BTL기숙사 특별개관은 실시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사와 사전협의 후 개관하며, 개관에 필요한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9조(계절학기 개관) ①동·하계 방학 중에는 입사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개관을 할 수 있다.

- ②기숙사사용료, 입사 기준 및 절차 등은 생활원장이 정한다.
- ③중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(주 단위)의 금액을 환불한다. 단,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.

제20조(시행세칙) 이 선발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생활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<2013.11.01.>

이 선발기준 및 절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4.03.28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4.12.30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5.10.30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6.12.01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7.11.21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8.12.07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9.06.09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9.11.13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0.11.30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2.06.13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2.12.13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3.05.26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제9조 3호는 2024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 선발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3.11.13.>

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【별표 2】기숙사 사용료 기준 중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기숙사 사용료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 1】선발절차

| 구분 | | 세부 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I 단계 | 신입생 | - 수시/정시, 단과대학별, 성별, 호실별로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-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은 매 학년도 1학기만 적용 |
| | 재학생 | - 학년별, 성별, 호실별 등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|
| | 복학생, 편입생, 재입학생 | - 성별, 호실별 등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<신설 2020.11.30.> |
| II 단계 | | - 미달인 경우 추가선발(적용 순서) ① 해당 학년 내 불합격한 학생 중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(재학생 선발 시에만 해당) <개정 2020.11.30.> ② 학년 구분 없이 불합격자 중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|
| III 단계 | | - 최종 선발 확정 |

【별표 2】기숙사 사용료 기준 <개정 2023.11.13.>

(단위 : 원)

| 기숙사 | 구분 | 기간 | | 호실 | 납부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|
| 제1 기숙사 | 기숙사 입사 | 1주 | | 1인실 | 70,000 |
| | | | | 2인실 | 55,000 |
| | | | | 3인실 | 40,000 |
| | 특별개관 (1실/일) | 교내기관 | | 2인실 | 35,000 |
| | | | | 3인실 | 40,000 |
| | | 외부기관 및 단체 | | 2인실 | 55,000 |
| 3인실 | 76,000 | | | | |
| 제2, 3 기숙사 (BTL) | 기숙사 입사 | 1주 | | 1인실 | 80,000 |
| | | | | 2인실 | 40,000 |
| | 공공요금 | 학기 | 1주 | - | 10,000 |
| | | 방학 | | | 20,000 |
| | 시설보증금 | 1회 / 입사기간 | | | 60,000 |
| | 특별개관 (1실/일) | 교내기관 | | 2인실 | 35,000 |
| 외부기관 및 단체 | | | | | 55,000 |
| 제1, 2, 3기숙사 | 침구류 (특별개관) | 1회 | | 1인/1set | 15,000 |

※ 제2, 3기숙사의 공공요금 및 시설보증금은 퇴실 시 정산 후 추가징수 또는 환불

※ 사전입사 후 중도퇴사 시 사전입사 기숙사 사용료의 환불은 되지 않음

※ 제2, 3기숙사 공공요금 중 동/하계방학은 계절학기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한다. <신설 2023. 05.24>

【별표 3】기숙사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기숙사 사용료 납부 및 환불 기준<삭제>

【별표 4】자치회 임원 포상 기준<삭제>

【별표 5】특별개관(외부단체) 대상 및 사용절차

| 대상 | | 사용(예약)절차 방법(공문접수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내부기관 | 본교 각 학과(부), 부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| · 각 학부(과), 부서 → 생활원 | · 부서장이 결재한 행사 계획안 필수 첨부 |
| 외부기관 및 단체 | 본교 각 학과(부), 부서에서 후원, 지원 등을 하는 행사 | · 외부기관 → 본교 학과(부), 부서 → 생활원 | |
| |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 | · 외부기관 → 생활원 | · 내부 논의 및 검토 후 사용 허가함 |

